

수지초등학교 친목회 회칙

제1조 총 칙

제1항(명칭)

본회는 수지초등학교 직장 친목회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
제2항(목적)

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가정의 애경사 시에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음으로써 우의를 돈독히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3항(회원의 자격)

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한다.

제2조 본 회의 임원 및 활동

제1항(임원)

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
1.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**총무 2명**을 둔다.
2. 그룹별 간사 1명씩을 둔다.

제2항(회원임기)

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3조 임원의 임무

제1항(권리와 의무)

1. 사안 발생 시 그룹 간사가 주축이 되어 전체 안내 및 진행을 추진한다.
2. 회장 및 총무는 그룹 간사와 상의하여 상호 부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.

제2항(총무)

회장을 보조하여 회계기록, 정리 및 결산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한다.

제4조 회비의 운영

제1항(회비의 운영)

매월 회원의 적립금으로 충당하고, 회비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울 때 임시회의 시에 보고하고 추가 징수한다.

제2항(회비의 운영)

매월 정기 회비는 10,000으로 한다.

제5조 총 회

제1항(정기총회)

매년 1회 3월 중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항(임시총회)

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
제3항(의결)

총회에서 제출된 안건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,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4항(결산보고)

회비 사용에 대하여 감사는 결산 결과를 2월 말에 회원에게 상세히 보고한다.

〈표〉 친목회 기금 지출

구 분	본인	배우자	자녀	부모	시부모 장인/장모	비고
결 혼	200,000		200,000			
사 망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조의 화환 별도
병 상	100,000					질병으로 연속1주일 이상입원하는 경우
출 산	200,000	200,000				
퇴 임	▶ 정년 / 명예퇴임: 500,000 지급 + 꽃다발 증정					
인사이동	▶ 현금 20,000 지급					
기 타	1) 기타 사안의 발생 시 임시회의를 통해 협의 결정한다. 2) 본회를 대표하여 원거리 및 특별한 회무(모임의 사무)의 수행 시 회장의 직권으로 거리, 장소, 인원수, 회무 (모임의 사무)의 종류에 따라 일체의 교통비 및 잡비를 사용하거나 지급한다. 지급 기준은 본교를 기준으로 이동 거리가 50km 이상일 때 적용하며,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 이동거리 편도 50km~99km는 50,000원, 100km 이상은 100,000원을 지급하며, 지급 대상 인원은 차량 운전자를 기준으로 최대 3인으로 제한한다. (관리자, 동학년, 해당부서를 우선으로 지급) 3) 회기마감 후 총무에게 50,000상당의 격려비를 지급한다.					

제6조 기타 사항

제1항

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나 근무 보조요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한다.

제2항
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 관례를 따른다.

제3항

상조회 회칙을 변경할 경우 회원들의 2/3 이상 찬성이 있을 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.

※ 부 칙

본회의 회칙은 202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